## 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실제 계약은 「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과 비대면 채널등의 계좌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정기예금			
거래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			
가입금액	제한 없음			
계약기간	1 개월에서 60 개월(5 년) 이내에서 연, 월, 일로 정함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원금 및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이자지급제한	제한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com)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기본 이자율	유형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2024.03.01 기준)		2.68	2.86	2.54	2.54	2.30	2.30	2.30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DC/IRP)	2.41	2.60	-	2.28	_	2.04	2.03
	(2024.03.01 현재 만기 이자율, 연 %							_ l율, 연 %)
	유형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약정 이자율	확정급여형(DB)	3.25	3.47	3.09	3.09	2.81	2.81	2.81
(2024.03.01 기준)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 (DC/IRP)	3.15	3.37	-	2.99	-	2.71	2.71
	※ 상기 이율은 기준일 현재 금리로 신규일(또는 재예치일) 실제 적용이율은 비대면 채널등의 계좌 상세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com)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ul><li>중도해지이자율 성</li></ul>							
	실제 중도해지이자율							
	※ 신한은행인터넷홈퍼							
	> 금리안내 > 금리							
		<ul> <li>● 1 개월 미만 : 연 0.10%</li> <li>● 1 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X (1-차감율) X 경과월수/계약월수</li> </ul>						
	⊙ 1 개월 이상 : 🧷							
중도해지	(단, 연 0.10%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0% 적용)							
이자율	※ 차감율(2024.03.01 현재)							
(2024.03.01 기준)	경과기간 1개월이	상 37	H월이상	6개월0	상 97	H월이상	11개월	이상
	차감율 80%		70%	30%	)	20%	109	6
	기본이자율×(1- <u>차감율</u> )×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 연 0.10%)							
	연 0.10%						<u> </u>	
							$\dashv$	
	신규일 1 개월	3 개월	₫ 6	) 개월	9 개월	11	개월 [	만기일

이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

- 1) 가입자의 퇴직,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④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가입자(근로자)가 사회·자연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3)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

## 3) 되작인금의 계약에서 자유

-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③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④ 수탁자의 사임
- ⑤ 가입자 사망
- 4)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
- ①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 ②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 5) 신한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

## 특별중도해지

	<ul><li>● 특별 중도해지이자율</li></ul>							
	신규(재예치) 계약기간	특별 중도해지이자율						
	계약기간 12개월 이하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계약기간 24개월 이하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계약기간 36개월 이하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						
	    계약기간 60개월 이하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						
		▶경과기간 36개월 이상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이 예금의 36개월제 약정이자율						
	※ 단, 『퇴직연금계익	《 단,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신규일 또는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 일단위 정기예금의 경우 계약기간 및 경과기간이 월 단위로 적용됨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원미만 절사)							
이자계산방법	신규일 만기일							
	○							
		· · · · · · · · · · · · · · · · · · ·						
	⊙ 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							
계약해지방법	해지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							
계극에시하다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2회까지 일부해지 가능							
일부해지	●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1917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③ 퇴직연금 수수료	료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퇴직계좌에 편입된 정기예금은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됩니다.			
재예치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계좌(IRP)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계좌(IRP)에 편입된 정기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 조의 의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확정기여형(DC),개인정 퇴직연금(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목 1인당최고 5천만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비보호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b>1</b> 舌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5 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통장발행	이 예금은 통장발행이 불가합니다.				
거래제한	1) 공동명의 : 불가 2) 담보등록, 질권설정 및 양도 : 불가				
위법계약 해지권	<ul> <li>●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주1)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li> <li>●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기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단, 계약종료시 행사불가)</li> </ul>				

#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 17 조 제 3 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 18조 제 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 19조 제 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 20조 제 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 21 조)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 자료열람 범위가 기재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권 ● 은행은 이 자료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위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5년) 해당 보관기간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u>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u>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